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0-106호

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[정정]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96호(2008.11.06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9호(2013.02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8호(2018.02.08),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, 은평구고시 제2014-45호(2014.05.22), 은평구고시 제2014-95호(2014.12.18), 은평구고시 제2015-29호(2015.05.14), 은평구고시 제2015-45호(2015.06.11), 은평구고시 제2015-51호(2015.07.16.), 은평구고시 제2016-44호(2016.05.26.), 은평구고시 제2016-48호(2016.06.09.), 은평구고시 제2020-29호(2020.03.19.)로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사항)지정되고, 은평구고시 제2014-77호(2014.10.30)로 사업시행인가, 은평구고시 제2014-98호(2014.12.26.), 은평구고시 제2015-59호(2015.07.30.), 은평구고시 제2017-56호(2017.06.15.), 은평구고시 제2017-96호(2017.09.14.), 은평구고시 제2018-92호(2018.09.13.), 은평구고시제2020-73호(2020.05.21.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한 내용 중 착오 기재된 사항이 있어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
2020년 06월 25일

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

사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(정정)전

	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폐율 (%)	연면적 (㎡)	용적율 (%)	층수 (최고높이)	건축물의 용도
기정	99,598.60 (택지1,2)	21,846.11	22.06	362,515.83	239.37	지하3층~지상23층 (72.20m)	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
변경	99,279.20 (택지1,2)	21,886.25	22.17	362,565.31	240.14	지하3층~지상23층 (72.20m)	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

사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(정정)후

	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폐율 (%)	연면적 (㎡)	용적율 (%)	층수 (최고높이)	건축물의 용도
기정	99,029.60 (택지1,2)	21,846.11	22.06	362,515.83	239.37	지하3층~지상23층 (72.20m)	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
변경	98,710.20 (택지1,2)	21,886.25	22.17	362,565.31	240.14	지하3층~지상23층 (72.20m)	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

※ 다른 내용은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0-73호(2020.05.21.)와 동일. 끝.